

외국대학 교환 학생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자 하는 교환학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외국대학에서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기간 학생은 예외.)

제3조(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 2, 3학년 학생에 한한다.
2. 전체 학점이 3.0 이상인 자
3. 삭제 (2016.12.30.)
4.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 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해당 기간의 등록금을 본교에 정한대로 납부한 자
7. 기타 교환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한 자 (2005.2.14.개정)

제4조(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절차) 교환학생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선발규정에 의거 선발한다. (2016.12.30.개정)

제6조(교육과정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2.27.개정)

1. 동일 또는 인접분야 전공교과목 및 교양과목과 관련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12.30.개정)
2.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교무처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학기한) 교환 수학기한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2016.12.30.개정)

제8조(출국허가) 교환학생의 출국허가는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락하다.

제9조(이수증) 교환학생은 수학기한이 끝나면 교환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증을 반드시 귀국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취득학점 인정)

1. 교무처는 교환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위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6.12.30.개정)
2. 교환 학점은 1년 동안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해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과목인정은 교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의거하며, 소속 전공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에서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 인정한다.

4-1-5 외국대학 교환 학생에 대한 규정

(2016.12.30.신설),(2020.2.25.개정)

4. 취득 학점 인정시 교과목 명칭은 동일한 것을 우선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 순으로 대체한다. (2016.12.30.신설)
5.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별도 교육과정 또는 언어연수 교과목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2016.12.30.신설)

제11조(학생지도) 교환학생의 학생지도는 교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환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